

○ 이광수 위원('96. 11. 28 농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시)

(질 의)

- 환경부장관이 각도에 시달한 시·군·구 환경담당 인원충원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는데 문서사본 제시와 원장님의 대처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.

(답 변)

- '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진흥 공무원 지방직화가 농촌진흥 공무원 신분상의 변화 및 업무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, 급변하는 국내의 농업여건에 맞춰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첨단기술농업 개발 보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방화에 맞게 보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- 농촌지도직의 정원조정은 “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”에 의거 환경부에서 농촌지도직의 환경분야 인력으로 활용토록 하는 공문은 타 기관에 대한 예의를 무시한 처사이었다고 생각합니다.
- 환경부 발송 공문이 지난 10월 28일 도청 관련부서에 접수되었고, 당일 사항이 인지되어 농촌진흥청에 즉시 부당성을 전언 제시하였고,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장과 농림부장관이 강력히 항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사과문이 10월 28일 각도 농촌진흥원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.
- 사과된 내용에 대하여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